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65세 이전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자 등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 부여>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0366호)

2024.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문 상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6. 12.
- (3) 회 부 일 : 2024. 6.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어 연령이 동일하더라도 장애출현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다목 및 라목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 수급 이력이 없었던 장애인과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자 등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호 다목 및 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2. ----- ----- -----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설>	다.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
<신설>	라.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

현행	개정안
3. (생략)	<u>려운 사람</u> 3.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¹⁾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²⁾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³⁾,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등 일정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이 되더라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제5조제2호가목)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는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 기존 활동지원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2월 개정된 사항임.⁴⁾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자료: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재구성.

□ 즉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수급자만이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더라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가지며,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 수급 이력이 없었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노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됨.

- 이로 인해 장애를 가진 노인일지라도 ‘활동지원급여 수급 이력’ 또는 ‘장애 출현시기’에 따라 수급할 수 있는 급여 종류가 활동지원급여 혹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로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활동지원급여 수급 이력 또는 장애 출현시기와 무관하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실상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연령 상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9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106064호)

□ 활동지원급여(월한도액 최고 7,754,000원[1구간])와 장기요양급여(월한도액 최고 2,069,900원[1등급]) 간 급여량 편차가 크다는 점,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 기존 활동지원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2월, 개정된 같은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65세 이전 활동지원급여 이력이 없거나,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자에게도 필요하다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인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형평성 제고 및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강화 측면에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임.

< 활동지원급여 및 장기요양급여 월한도액 비교 >

구분	활동지원급여 월한도액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 월한도액
1구간(등급)	7,754,000원	2,069,900원
2구간(등급)	7,269,000원	1,869,600원
3구간(등급)	6,785,000원	1,455,800원
4구간(등급)	6,301,000원	1,341,800원
5구간(등급)	5,816,000원	1,151,600원
6구간	5,332,000원	-
7구간	4,845,000원	-
8구간	4,362,000원	-
9구간	3,878,000원	-
10구간	3,393,000원	-
11구간	2,909,000원	-
12구간	2,424,000원	-
13구간	1,940,000원	-
14구간	1,456,000원	-
15구간	971,000원	-

자료: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⁵⁾, 재구성

□ 다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간 목적, 지원대상, 재원(일반회계 또는 보험료) 등의 차이, 재정소요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과 65세 이후 장애 발생자에 대해서도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임.

-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 지원에 더해 사회활동을 지원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는 주로 일상 및 가사활동을 지원함.

<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비교 >

구분	장애인활동지원('11년 ~)	노인장기요양보험('08년 ~)
목적 (법률)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제도 취지	○ 장애인에게 <u>일상생활 + 사회생활</u> 을 지원	○ 고령·노인성 질병 등의 노인에게 <u>일상생활</u> 을 지원
신청자격	○ 6~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65세 이후 장기요양 전환자 보전급여 지급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보전급여 지급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급여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없음	○ 재가급여: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등 ○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재정	○ 일반회계 예산, 의무지출 ○ 2조 2,846원('24년, 국비) * 예산상 편성인원 12만 3,715명	○ 독립회계(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 13조 6,966억원('23년 지출, 현금흐름기준)
대상자 수	○ 15만 1,259명('23.12월 기준)	○ 109만 7,913명('23.12월 기준)
급여량 (시간)	○ 활동지원 구간별(1~15구간) - 월 60~480시간(97~775만원)	○ 인정조사 등급별(1~5등급) - 월 63시간~124시간(115~207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5)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0380&zoomSize=\(최종검색일, 2024.7.9..\)](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0380&zoomSize=(최종검색일, 2024.7.9..))

□ 특히 개정안의 내용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어 논의되었던 사안으로 당시 법안심사소위원회(2023.2.14.)⁶⁾에서 보건복지부는 재정 추계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활동지원급여 수급 이력 또는 장애 출현시기와 무관하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한다면, 이는 사실상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연령 상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과반(약 54%)임을 고려할 때,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예산 만큼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지원에 투입하는 것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예산의 최소 2배 이상(고령장애인의 신체능력 저하에 따른 급여 시간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예산이 2배 확대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지방재정에도 급격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⁷⁾

< 장애인 현황 >

구 분	장애인 현황		
연도	2021	2022	2023
등록장애인 수	2,644,700명	2,648,424명	2,641,896명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장애인 수	1,357,215명	1,397,669명	1,425,095명

자료: 보건복지부

6)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부여(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042호(2021.12.22.)),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 연령 상한 폐지(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8583호, 2022.11.30.))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된 바 있으나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7)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현재 약 2조3,000억원의 일반회계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국비:지방비 비율은 서울의 경우 5:5, 그 외 지방은 7:3

□ 한편, 장애인 및 노인 관련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인 관련 지원은 노인 관련 지원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만 65세 미만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전 서비스 진입 시에만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관련 지원의 대상으로 인정함.⁸⁾

- 스웨덴: 65세 미만이 활동지원급여 대상이며, 노화로 인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대상에 포함
- 호주: 65세 미만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한 사람이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지속 지원하되, 65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

□ 따라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재정부담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재원부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8) 보건복지부 제출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노인과 장애인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재원(일반회계 또는 보험료) 등의 지원체계상 차이, 재정소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 대상(65세 이후 장애 발생자)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아니었던 자(65세 이전 활동지원급여 미수급 장애인(보장시설 입소자 등))를 활동지원제도(일반회계)로 지원하도록 장애인활동법을 개정하는 것은 수용 곤란
- 개정안과 같이 65세 이후 연령 상한을 사실상 폐지하는 경우, 단서 조항으로서 현행법 제5조 본문의 연령제한 규정(6~65세 미만)을 형해화하는 효과가 있어 형식적으로도 부적절함.

나. 경상남도 밀양시

-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의 경우 장애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발생
 - 이에 노인장애인의 경우 단순히 장애인활동지원에만 의존을 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의무적 장기요양등급판정을 통하여 노화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은 장기요양서비스, 장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은 장애인활동지원을 통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추가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도래될 때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 간의 지원 급여의 격차가 커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기를 기피하는 수

급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관련 법률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문 의 처
02)6788-5502